주식 소각 후 갑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2.000원, 발행주식 액면총액은 1.200원으로 됩니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mark>자본금</mark>은 변하지 않습 니다. 그러므로 <mark>발행주식의 액면총액</mark>이 자본금이라는 <mark>상법 제451조 제1항</mark>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주식 소각 전 자본금 2,000원,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2,000원, 이익잉여금 2,000원 상태에서 주식 소각 후 자본금 2,00 0원,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1,200원, 이익잉여금 400원(주식 소각 전 이익잉여금 2,000원 중 자기주식 취득을 위스 하여 1,600원을 사용하여 현재 이익잉여금이 400원으로 되었습니다)으로 되어 자본금과 발행주식 액면총액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발행주식수가 감소하지만 그만큼 비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소각된 주식수만큼 신주를 재발행할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송옥렬, 상법강의 제7판(홍문사, 2017), 892-893 면 참조). निव्विचित्र

을 사용하여,

자기주식 소각 방식은 소각되는 주식 수만큼 자본금 감소(감자)를 수반하는 방법, 자본금 감소 없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법, 상환주식 등 이른바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회수한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 등이 있다.

과거 상법에서는 자본금 변동 없이 이익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법 을 '이익소각'이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2012년 개정 상법에서는 이익소각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이익잉여금 처분과 자 기주식 소각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이익소각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유상감자를 수반하는 자사주 소각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감자를 수반하지 않는 방식 즉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자기주식 소각은 이사회 의 결만 있어도 가능하다. 자본 감소의 범위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주주 간의 불공정 감자 가능성이 낮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금 감자가 없는 자기주식 소각의 경우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요사항보고 서(감자결정)'의 공시가 아니라 '주식소각결정' 또는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또는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과 '주식소각결정' 공시를 하게 된다.